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516
----------	------

발의연월일 : 2017. 2. 9.

발의자 : 이명수 · 권석창 · 홍문표
함진규 · 정태옥 · 박인숙
한선교 · 경대수 · 박찬우
성일종 · 강효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공직선거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이 범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부패방지법」 제50조의 죄”로 규정되어 있으나, 「부패방지법」은 2008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부패방지법」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2조제1호나목).

법률 제 호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부패방지법」 제50조의 죄”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불법정치자금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그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한다)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말한다.	1. ----- ----- ----- ----- -----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공직선거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이 범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u>「부패방지법」</u> 제50조의 죄	나. ----- ----- ----- ----- ----- ----- ----- <u>「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u> 제86조의 죄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